■ 공소청사건사무규칙 [별지 제169호서식] <개정 2026. 10. 1.>

○○지방공소청

우편번호/ 주소/ 전화/ 팩스/

수신자 : 발신자 : 공소청

제 목 : 부재기결정 통지 검 사 : (인)

귀하가 재기 신청하신 피의자 ○○○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기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.

① 사 건 번 호		
피 의 자	② 성 명	
	③ 주민등록번호	
④ 결 정 일 자		
⑤ 결 정 이 유	□ 피의자 계속 소재불명 □ 상피의자 () 소재불명 □ 참고인 () 소재불명 □ 고소인 () 소재불명 □ 기타	
비 고		

안 내

재기를 하지 않는 결정이유가 소재불명인 경우 소재불명자의 소재가 확인되면 다시 재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]